

부속서 11-나
기술 지원 요청 목록

캄보디아

관련 규정	기술 지원
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제 2 항가호	캄보디아의 운영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, 상표의 처리,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전자 출원 제도 구축 지원
제 11.9 조(다자 협정)제 1 항마호 및 바호, 제 11.14 조(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), 제 11.16 조(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구제 제공의 제한 및 예외), 제 11.19 조(상표보호), 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제 2 항, 제 11.48 조 (식물 신제품의 보호), 제 11.62 조(침해 상품, 재료 및 도구의 폐기), 제 11.64 조(잠정조치)제 1 항가호, 제 11.74 조(형사 절차 및 처벌)제 3 항나호 및 다호, 그리고 제 11.75 조(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)	<p>1. 다음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:</p> <p>가. 소리 표장 보호에 적용되는 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</p> <p>나. 소리 표장의 보호에 대한 상표 심사관</p> <p>다. 상표, 특허 및 식물 신제품에 대한 전자 출원 제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보 기술 전문가, 그리고</p> <p>라. 권리 관리 정보, 기술조치 및 집행과 관련한 직원 및 전문가</p> <p>2. 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 및 「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 가입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</p>

라오인민민주공화국

관련 규정	기술 지원
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 2 항가호	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운영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, 상표의 처리,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전자 출원 제도 구축 지원

미얀마

관련 규정	기술 지원
제 11.13 조(집중관리단체)	집중관리단체의 운영 및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설립 및 제공에 대한 지원
제 11.19(상표 보호) (비전형 표장에 대하여)	상표 심사관들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인 전형적인 상표에 제한되지 않고, 모든 유형의 상표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에 대한 지원
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 2 항가호	미얀마의 운영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, 상표의 처리,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전자 출원 제도 구축 지원
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 2 항나호	미얀마의 운영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,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
제 4 절(지리적 표시)	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제도의 이행 및 발전 지원
제 11.69조(직권 조치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	직권 조치에 의한 집행을 위하여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및 위조된 상표 상품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얀마 세

지) 및 제11.70조(직권 조치의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)	관 당국의 역량 개발 지원
제11.75조(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)	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미얀마의 운영상 필요를 위한 지원

베트남

관련 규정	기술 지원
제 11.9 조(다자 협정) 제 1 항마호부터 사호까지, 제 11.19 조(상표 보호) 및 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 2 항	<p>1. 다음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소리 표장 보호에 적용되는 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직원 나. 소리 표장의 보호에 대한 상표 심사관, 그리고 다. 전자 제도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한 정보 기술 전문가 <p>2. 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, 「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, 마라케쉬 협정의 가입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</p>